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2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강준현 · 윤준병
박민규 · 이광희 · 이성운
박희승 · 한준호 · 노종면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·운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, 기존의 전산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(안 제136조의2 신설).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6조의2(지능형 정보기술의 활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36조의2(지능형 정보기술의 활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